



한국프라스틱조합과 합성수지 연합회 통합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과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합병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합병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달 내로 연합회가 프라스틱조합으로 이전, 합병 단체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활동하게 된다. 본지에서는 양 단체의 설립부터 합병 계약 체결까지의 경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설립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1973년 2월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과 대한합성수지원료공업협동조합이 합병돼 탄생됐다.

1973년 2월 서울시 중구 충정로에서 업무를 개시하고 4월 상공부장관의 합병인가, 1975년 5월 부산사무소를, 1977년 6월 대구 사무소를 설치했다. 1977년 현 소재지인 서울시 중구 쌍림동으로 이전했다.

초대 한기태 이사장이 제3대까지 연임했으며 제4대 윤국로 이사장, 제5대와 7~8대 황승민 이사장, 제6대 신정휴 이사장, 제9대~10대 이 웅 이사장, 제11~13대 이국노 이사장에 이어 14대 신진문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상공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500여 플라스틱 전문생산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조합은 특히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단체수의계약물품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에 공급하고 있다.

조합은 한국플라스틱연구조합 및 한국플라스틱시험원을 발족, 설립하였고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지정 받아 플라스틱과 관련된 각종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PL마크)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고 있다.

조합의 주 활동을 보면 ▶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보관, 운송, 기타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운영 ▶ 조합원간의 사업조정 관련 기획 및 조정과 중소기업이 아닌 3자가 조합원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부 장관에 대한 조정신청 ▶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에 의한 모기업체와 조합원인 수결기업체 간의 계열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어음할인 포함) 또는 대부 알선과 조합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 플라스틱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998년 7월 7일 서울시 성동구에서 연합회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으며 11월 17일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구역)에 의거 협동조합은 행정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도를 업무구역으로 한다는 근거에 따라 1994년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11개시, 도지방협동조합이 설립운영 되고 있다.

1999년 품질인증시험검사실 개소, 1999년 10월 현 사무소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하게 됐으며 초대 회장인 권중식 회장은 3대까지 연임하고 있다.

연합회와 회원조합인 각 시, 도 지방협동조합에서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52로 플라스틱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폴리에틸렌필름(플라스틱봉투, 포대 및 방수시트, EVE LLDPE 포함), FRP제품, SMC물탱크를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 받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단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 ▶ 회원조합간의 조직 강화 및 기능 활성화와 기능별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공동사업 품목 및 사업량 확대 ▶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추진 ▶ 기술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 환경친화사업개발지원 ▶ 시책추진 및 조사 활동 강화 ▶ 정보화 및 홍보활동 강화 ▶ 수출입업무 지원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과 연합회 합병 추진 경과

지난 2002년 9월 12일 조합은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연합회와의 합병 추진을 의결하였고 9월 중 기청, 기협중앙회에 합병추진에 관한 협조 사항을 요청해 조합원사 212업체에 합병 의견조사 문서를 발송해 165업체가 찬성을 한 바 있다.



10월 22일에는 연합회 권중식 회장이 조합에 방문해 신진문 이사장과 통합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며 10월 24일 합병에 원칙적 합의하고 주무관청과 사전협의 등 절차를 논의했다.

11월 22일 연합회는 대의원 총회를 열어 합병에 관한 제반사항을 권중식 회장에게 위임했다.

12월 13일 중기청에서 단체수의계약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양 단체는 2002년 12월 분쟁타결을 위해 “합병”을 추진중이고 플라스틱 업종이 국내 주요 업종임을 감안, 2003년 3월까지 양 단체의 통합을 조건으로 2002년과 같이 한시적으로 2개 물품씩 지정했다.

12월 30일에는 양 단체가 제2차 실무협의를 열어 합병총회에 대비하여 정관에 명시된 합병계약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중점 검토했다.

2003년 1월 21일에는 합병합의서를 체결하고 27일 합병관련 조합원사 간담회를 개최한 한 바 있다. 중소기업법 제40조 (총회의 의결사항)에 의거해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은 2003년 2월 5일 합병 계약서를 상호 날인하여 2003년 2월 7일에는 제6차 정기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며 2003년 2월 20일 제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수 457명 중 찬성 116명, 반대 89명 서면찬성 118명으로 승인됐다.

연합회는 지난 2002년 12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조합과의 합병 추진에 대한 제반 업무를 회장 단에 전적으로 위임해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3년 2월 26일 제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조합의 만장일치로 찬성을 얻어 승인됐다.

조합과 연합회 합병 계약 내용

합병연합회 명칭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프연합회”라 한다)로 하며 한프연합회는 전국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한다. 한프연합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46-2번지로 지금의 조합 건물에 위치할 예정이다.

합병연합회의 회장은 현 신진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하며 기존의 권중식 연합회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전무이사 1인은 조합대표와 연합회대표가 협의 추천 선임하고, 비상근이사 30인(조합에서 15인, 연합회에서 15인 선임한다.(대의원도 조합과 연합회에서 각각 1/2씩 선출한다)으로 한다.

또한 한프연합회의 직원은 조합과 연합회의 기존 직원을 전원 인수하고 한프연합회의 복무규정에 따라 신분을 보장한다. 특히 단체수의계약물품 소관에 있어서 단체수의계약물품 중 조합의 PE관과 연합회의 PE광폭필름은 물품의 특성, 생산조합원사의 지역분포 등을 감안, 한프연합회가 관련 업무를 운영하도록 현 지방조합과 연합회는 결의한다(단 합병연합회는 관련 품목에 대하여 전체 생산업체의 의견을 우선 존중한다).

조합과 연합회는 합병등기 전일자로 재무재표를 작성하고 제1항의 기간동안에 발생하게 될 재산

이동명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고 상호 이를 확인하며 모든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일체를 확정하여 한프연합회에 인계한다.

조합은 조합자산을 청산하여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과 지분을 조합원 동의하에 조합원 사업장내의 지방조합에 출자전환하고 각 해당지방조합은 집계하여 한프연합회 출자금으로 한다.

연합회 또한 연합회 자산을 청산하여 회원조합 동의하에 출자금과 지분을 한프연합회 출자금으로 하며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지방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가입절차는 해당조합 규정에 따른다.

결론

중소기업청 합병 관련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64조 (합병의 절차)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조합의 합병에는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의 합병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 (합병시의 설립위원) ①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함에는 각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기타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 (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성립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성립한 조합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러한 통합 관련법이 있기는 하나 전례에는 단체 통합이 거의 성사된 경우가 없어 법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조합과 연합회의 추진 위원회는 관련 부처의 주무관과 직접 접촉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로는 양 단체의 통합에 있어서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의 체계화된 단체로 활동하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재 주위에선 유관 단체간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조합이나 협회, 연합회가 많이 있다.

이번 조합과 연합회 통합의 선례가 유관 단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 단체 통합을 통해 국내 플라스틱 업계의 발전에 배가되길 기대해 본다. ☐

권해진 기자